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2차 현영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18. 12. 19.(수), 13:00 ~ 16:50
- ▣ 장 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출석의원 : 전영우, 김용준, 백운기, 백인성,  
우경식, 이상돈, 이상석, 이유미,  
이 정, 최종희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공개)
2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주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선형개선공사	(공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관련 사업기간 및 토지이용계획 허가사항 변경	(공개)
4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주변 화력발전소 증축	(공개)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6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공개)
7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공개)
8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9	「태안 신두리해안사구」 내 모래포집기 및 바람골 설치	(공개)
10	「담양 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소형저온저장고 신축	(공개)
11	「담양 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산물판매장 신축	(공개)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43건)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8-12-01

### 1.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 가. 제안사항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을 연장하고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1988년 잠수정 취항
  - 2000.7.18.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지정
  - 2002~2017 2년 단위로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현상변경 허가
  - 2017.12.20.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 조건부 허가
    -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문섬 잠수정 운항구간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가기간 및 운항 노선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등
  - 지정일 : 2000.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주변해역
  - 사업내용 :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설치운영 기간 연장
    - 당초 허가기간 : 2018.1.1.~2018.12.31.(1년간) ABCD구간 운항, E구간 휴식
    - 연장 신청기간 : 2019.1.1.~2020.12.31.(2년간)
      - \* 2019.1.1~2020.12.31.(1년간) ABCD구간 운항, E구간 휴식
      - \* 2020.1.1~2021.12.31.(1년간) ABDE구간 운항, C구간 휴식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설치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지난 2017년 12차 천연기념물분과문화재위원회 시 조건부 허가한 사항이며,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잠수정 운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허가조건
    - 운항기간 : 2018.1.~12.(1년) ABCD구간, E구간 휴식.
    - 현재 진행 중인 문섬 잠수정 운항구간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가기간 및 운항 노선 재검토.
  - 모니터링 결과
    - 현행처럼 운항구역을 이분화하고 3년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연산호 군락의 자연회복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추진.

#### <\*\*\*\* 조정(안)>

- 잠수정 운항 구간 (신청) 2년마다 구간 변경→(조정) 3년마다 구간 변경
  - ABCD구간 운항 : 2018.1.1~2020.12.31.(3년간) / E구간 휴식
  - ABDE구간 운항 : 2021.1.1~2023.12.31.(3년간) / C구간 휴식
- 문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 규정
  - 연산호 구간 운항코스 변경시행 주기 : (당초)2년 →(조정)3년

####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18.12.17)

- 현재 ABCDE구획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잠수함 운항 시 선장의 경계선 인식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 물고기 피딩쇼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를 기준으로 수직(0m-30m)가상선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으로 양분하여 휴식년제를 번갈아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
- 운항구간에서 지난 3년간 인위적(실험적) 교란 후 자연회복 양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3년 후 교란지점은 인근 대조구와 비슷한 형태의 양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됨.
- 따라서 현재 운항구역을 이분화해서 3년 주기로 휴식년제를 철저히 지키고, 각각 기운항구역의 회복과정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문화재청에 보고한다면 문섬북측면 연산호 군락의 보존과 잠수함운항이라는 생태계 이용이 병행가능하다고 판단됨.

(\*\*\* \*\* 의견 / '18.12.12)

- 기존 허가사항에 기간만 연장하는 사안으로 관광객들에게 해양생태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재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보고서 종합결론 요약

**보고서 : 서귀포 문섬 잠수함 운항구역 해양 저서생태계 변화 분석**

**(수행자 : \*\*\*대학교 \*\*\*\*과 \*\*\*\*\*연구실)**

- 잠수정의 마찰에 의한 훼손 후 자연복원과정을 보기 위하여 인위적 교란을 가해 26개월 정도의 천이과정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현재 연산호는 약70%, 해조류는 90%의 회복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4월에 확인 되었던 연산호와 해조류의 불균형적인 회복양상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됨. 이전 조사시기까지 불균형하게 나타난 양상은 여러 환경, 물리적 요소로 인해 군집구조의 변동이 다소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천이 과정의 특징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2018년 4월 급격히 증가하였던 엽상 해조류 피도가 여름철 고수온의 영향으로 쇠퇴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착생중이던 해계두목 연산호의 생장률 증가로 회복양상의 균형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됨. 아직 연산호 군집의 회복률은 해조류 군집의 회복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완전히 균형잡힌 회복 양상이 나타나는 시점과 기간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위한 계속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조사시점에서 나타난 연산호 및 저서생물군집의 전체적인 회복량은 총 저서생물의 균등도를 감안 약80%정도로 산정하며, 최초 교란시기 이후 26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을 회복 완성기로 규정함. 양측 구역에서 나타난 질적, 양적 회복 양상에 대한 차이와 수심별 회복력의 차이에 대한 분석 등 2019년 자료가 반영되는 향후 0.5~1년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함.
- 결론적으로 문섬 북측면의 잠수함 운항지역의 연산호 군락 보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잠수정에 의한 물리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파도의 영향, 해류의 세기 등으로 마찰을 실질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운항구역을 “만남의 장소”를 기준으로 동쪽, 서쪽 3년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연산호 군락의 자연회복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두 지역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함.

<붙임 2>

**문섬 · 범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 현상변경 허가 처리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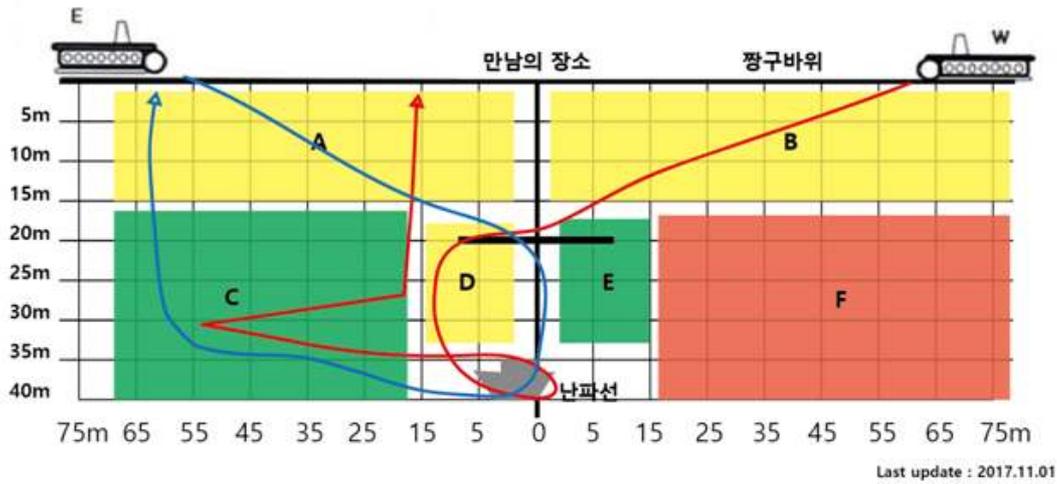
위 원 회 심의일자	신청내용	심의결과	허가조건
'01.9.24.	·잠수정 운항, 선착장 운영, 주차장 및 사무실 사용, 해상바지선 운영 ·수중가두리 설치, 중간 기착지 운영, 선가대 및 윈치실 운영, 앵카 및 해상브이 운영 등	조건부가결 (최초허가)	·허가기간 2년(2002~2003) ·현재 진행 중인 문섬 해저 생태계 조사·연구(한국해양연구소 주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제출 ·문섬 해저의 훼손된 암벽 보호 ·낙시꾼 제한 방안 강구(제주도)
'03.8.27.	·잠수정 운항노선 휴식년제 도입 ·휴식년제에 따른 신항로(폐선 및 어초 투하) 개설 ·잠수정 1척 증선 ·운항 허가기간 연장(3년/2004~2006)	조건부가결 (2차)	·허가기간 2년(2004~2005) ·새로운 잠수정 운항은 허가하고, 기존 잠수정은 수리 후 별도허가를 받을 것 ·휴식년제 실시와 관련한 신항로 개설은 폐선 및 인공어초의 설치위치, 규모 등에 대한 자료 보완한 후 재검토
'04.1.28.	·잠수정 추가 운항 ·폐선 및 인공어초 투하	가결	·문섬일원의 해양생물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잠수함 운항
'05.10.5.	·운항 허가기간 연장(2년/2006~2007)	조건부허가 (3차)	·잠수함이 산호가 서식하는 암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할 것
'06.2.22.	·잠수정 운항구간 확대 -삼도(섬섬) 동쪽 100m, 서쪽 100m 1일 3회 운항 -범섬 동쪽 100m, 서쪽 100m 1일 3회 운항 -외돌개 앞 해상 100m 1일 3회 운항	부결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가 큼
'07.10.24.	·운항 허가기간 연장(2년/2008~2009)	보류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현지조사 : 07.10.31.
'07.11.28.	·운항 허가기간 연장 재심의(2년)	보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재실시한 후 재심의
'07.12.26.	·운항 허가기간 연장 재심의(2년)	가결 (4차)	
'09.11.25.	·운항 허가기간 연장(3년/2010~2012)	조건부가결 (5차)	·허가기간 2년(2010~2011) ·휴식 중인 생태계 복원은 통계적 정리 조치
'11.11.30.	·운항 허가기간 연장(2년/2012~2013)	보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 간 실시한 분기별 운항구간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재심의
'11.12.28.	·운항 허가기간 연장 재심의(2년)	조건부가결 (6차)	·훼손된 지점의 자연회복 양상 등 생태학적인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

위 원 회 심의일자	신청내용	심의결과	허가조건
			검토의견을 받아 문화재청에 제출 (연2회/6월, 12월)
'13.11.27.	·운항 허가기간 연장 (2년/2014~2015)	조건부가결 (7차)	·전문기관의 모니터링 조사 시 다음 사항을 추가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시 군체성의 큰 분류군을 대상에 추가 *문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 규정 준수여부 확인 점검 *연차적으로 제출된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장기적인 변화 비교 관측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아 문화재청에 제출 (연2회/6월.12월)
'15.12.16.	·운항 허가기간 연장 (2년/2016~2017)	조건부가결 (8차)	·제출된 문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규정(3차 개정, 2015.12.21.)을 준수하여야 함 *훼손된 지역의 자연회복을 위해 2년 주기로 운항코스를 변경하여 휴식년제 실시 *문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 항규정 제4호 안전운항 지침 준수 확인을 위한 블랙박스를 잠수정 내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모니터링 결과는 년2회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문섬 북쪽 잠수정 운항으로 훼손된 지점의 자연회복 양상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추천한 해양생태전 문가를 조사자에 포함시켜야 함
'17.11.22.	·운항 허가기간 연장 (2년/2018~2019)	보류	·현지조사 후 재검토 *17.11.30.현지조사(***,*** 문화재 위원) -잠수정 운항 시 발생한 마찰면은 자연 회복이 필요하므로 금회 잠수정 운항 기간연장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잠 수정 운항 방안 모색 필요
'17.12.20.	·운항 허가기간 연장 재심의(2년)	조건부가결 (9차)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문섬 잠수항 운항 구간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토

위 원 회 심의일자	신청내용	심의결과	허가조건
			<p>대로 허가기간 및 운항노선 재검토 ·잠수정 운항으로 훼손된 지점의 자연회복 양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연2회 문화 재청에 제출해야 함</p> <p>*모니터링 시 잠수정 운항에 따른 훼손지를 선정하여 분기별 사진 촬영 후 모니터링 보고서에 수록</p>

<붙임 3>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 규정 개정 변경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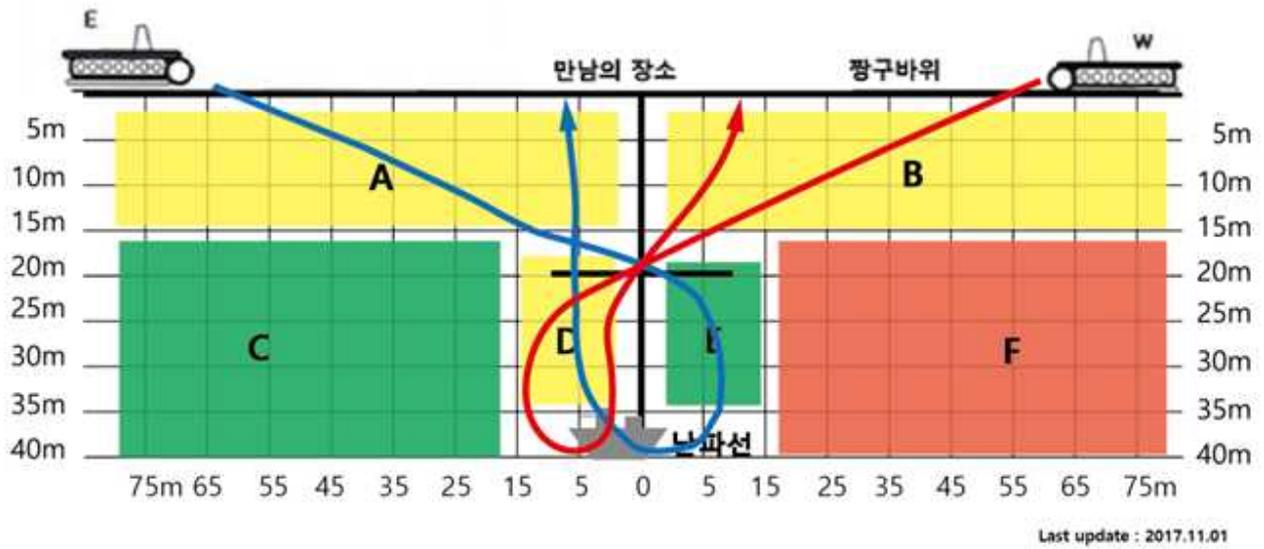
[2017년 개정 : ABCD구간 운항 : 2018.1.1~2019.12.31.(2년간)/E구간 휴식]



A,B:진입구간 C:2018,2019년 운항구간 D:난파선 병행운항구간 E:2018,2019년 휴식구간F:절대보존지역



[2021년 이후 : ABDE구간 C구간 휴식]



A,B:진입구간 E:2020년 운항구간 D:난파선 병행운항구간 C:2020년 휴식구간F:절대보존지역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허가기간 : 2년
- 운항노선 : ABCD구간 운행(E구간 휴식)

- 잠수함 운항 시 마찰면 최소화
- 훼손된 지역의 자연회복을 위해 3년 주기로 운항코스 변경, 휴식년제 실시
- 잠수정 운항으로 훼손된 지점의 자연회복 양상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연 2회 문화재청에 제출
  - 모니터링은 문화재청에서 추천한 해양생태 전문가가 실시
  - 모니터링 시 잠수정 운항에 따른 훼손지 선정, 분기별 사진 촬영 후 보고서에 수록
- 허가조건을 반영한 잠수함 운항규정 개정안 제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 2.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주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선형개선공사

### 가. 제안사항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주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선형개선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주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선형개선공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6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일원 공유수면
  - 지정일 : 2012.9.2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선형개선공사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38번지, 405-4번지, 하서리 42-6번지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수량	절·성토		문화재 이격거리
			절토	성토	
1공구	인도개설	L=118m, B=0.9m	0.5m	0.2m	160m
2공구	흙콘크리트 포장	A=357m <sup>2</sup>	0.4m	0.1m	16m
3공구	식생옹벽블록 설치	A=35m <sup>2</sup>	0.9m	1.1m	33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6.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16~160m 이격(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6~160m 이격된 1구역에 인도개설, 흙콘크리트 포장, 식생옹벽블록 설치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2.12.)**

- 신청 사업은 해안가 주상절리 탐방로를 정비하는 건으로 이 지역 탐방객의 편의 제고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사업 대상 3개 공구 중, 2공구를 제외한 2개 구간(1·3공구)의 사업 내용은 1구역의 자연성 유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요소가 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1공구>**

- 태풍으로 유실된 기존의 해변 지역 자연 탐방로를 대체하기 위해 해변 배후 사면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된 골재석을 이용한 인도용 구조물 (폭 2.7m, 높이 1m 내외, 길이 118m)은 이 지역 암석해안의 자연성을 훼손함은 물론, 향후 폭풍 또는 태풍 내습으로 인한 지속적인 훼손에 의해 이 지역 자연성에 2차 훼손 유발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탐방객의 통행을 위해서는 이 지역 사면위의 단구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기존 탐방로의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등)해야 할 것임. 해변 지역의 탐방로 개설이 필요할 경우, 유실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한 복원이 바람직함.

**<3공구>**

- 식생블록에 의한 옹벽 설치가 계획된 사면은 현무암 암반과 이를 얹게 덮은 식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이 사면에 대한 인위적 조경 목적의 옹벽 설치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의견 / 2018.12.4.)**

- 신청사업은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산책로인 ‘과도소리길(총1.7km)’의 일부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신청지 인근 사유지의 사생활 침해, 인도 포장의 노후화 및 주변 급경사면 노출 등으로 주민 및 관람객에 불편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본 사업 시행을 통하여 문화재 주변 산책로에 관람객 통행에의 방해요소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2공구 공사만 시행 (1,3공구 공사 제외)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관련 사업기간 및 토지이용계획 허가사항 변경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관련 사업기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관련 사업기간 및 토지이용계획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관련 ‘사업기간 및 토지이용계획’ 허가사항 변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 변경내용 : 실시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사업기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기 허가내용	변경내용	비고
사업면적	11,885,910m <sup>2</sup>	11,770,161m <sup>2</sup>	·115,749m <sup>2</sup> 감 부마선 철도부지 제척
문화재구역	·소계:82,733m <sup>2</sup> ·하천시설:10,786m <sup>2</sup> , ·교량:32,341m <sup>2</sup> , ·공원 및 녹지:39,706m <sup>2</sup>	·소계:84,944m <sup>2</sup> ·하천시설:10,786m <sup>2</sup> , ·교량:32,341m <sup>2</sup> , ·공원 및 녹지:41,917m <sup>2</sup>	·면적증가 : 2,211m <sup>2</sup> 증 ·하천시설 - ·교량 - ·공원 및 녹지:2,211m <sup>2</sup> 증
허용기준	·소계:1,189,890m <sup>2</sup> ·도로:31,518m <sup>2</sup> ,	·소계:1,308,621m <sup>2</sup> ·도로:9,653m <sup>2</sup>	·면적증가:118,731m <sup>2</sup> 증 ·도로:1,865m <sup>2</sup> 감

1구역	·오수중계펌프장:1,011m <sup>2</sup> , ·하천시설:136,786m <sup>2</sup> , ·교량:11,418m <sup>2</sup> (12개소) ·공원 및 녹지:1,008,694	·펌프장:261m <sup>2</sup> ·하천시설:136,786m <sup>2</sup> ·교량:11,418m <sup>2</sup> (12개소) ·공원 및 녹지:1,130,040	·펌프장:750m <sup>2</sup> 감 ·하천시설 - ·교량 - ·공원 및 녹지:121,346m <sup>2</sup> 증
허가 기간	2015.3.9. ~ 2018.12.31.	2015.3.9. ~ 2023.12.31.	5년 연장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3.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1~5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 허용기준 2구역 : (평지붕)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 15m 이하

\* 허용기준 3구역 : (평지붕)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경사지붕) 21m 이하

\* 허용기준 4구역 : (평지붕)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경사지붕) 36m 이하

\* 허용기준 5구역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라. 검토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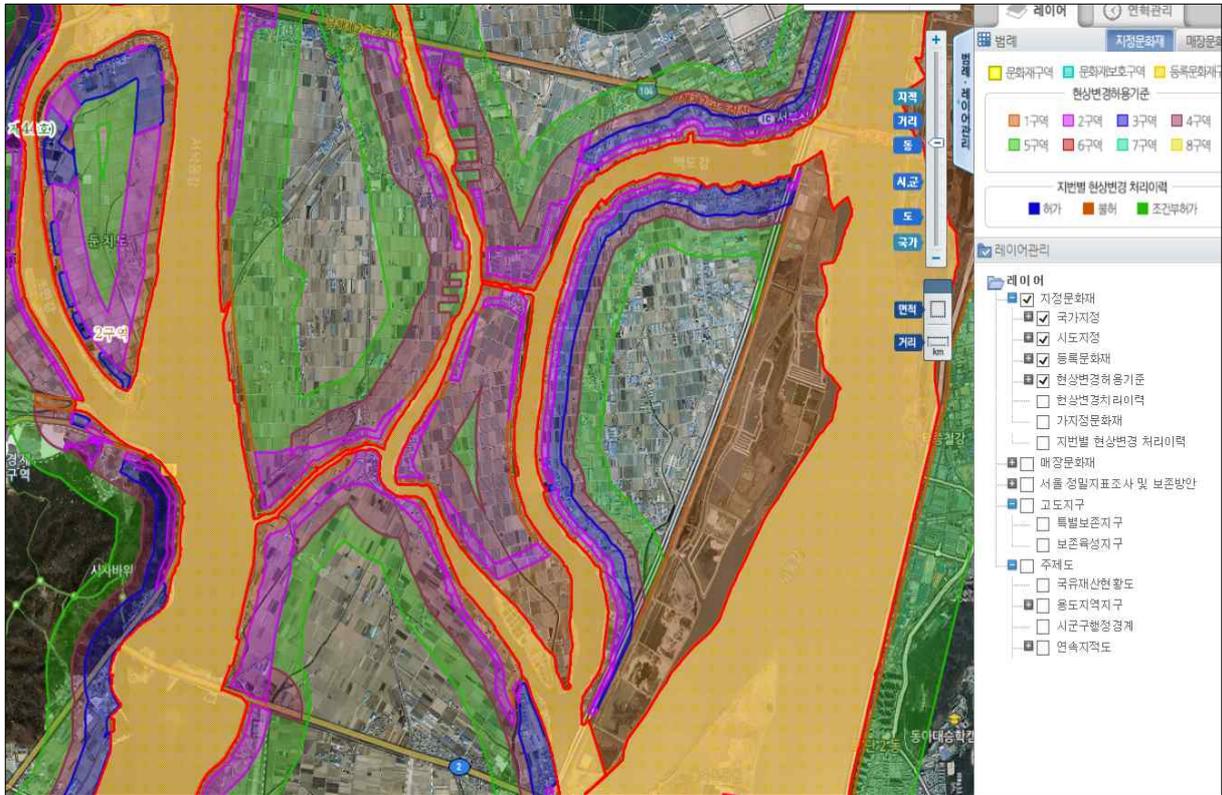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내·외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사업기간 연장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의견 / 2018.11.21.)

○ 2015년 3월 9일 기 허가된 허가사항 변경허가 건으로 미래지향적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며, 문화재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으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예정지 문화재구역도



□ 문화재구역과 허용기준 1구역 변경내역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당초	변경	
문화재 구역	하천시설	10,786	10,786	변경없음
	교량	32,241	32,241	변경없음
	공원 및 녹지	39,706	41,917	하천구역 결정에 따른 지구계 변경 * 면적 증가 : 2,211㎡
소 계		82,733	84,944	* 면적 증가: 2,211㎡
1구역	도로	31,518	29,653	토지이용계획 변경 * 면적 감소 : 1,865㎡
	오수중계펌프장	1,011	261	토지이용계획 변경 (위치 변경, 1구역 → 2구역) * 면적 감소 : 750㎡
	농업관련시설	463	463	변경 없음
	하천시설	136,786	136,786	변경 없음
	교량	11,418	11,418	변경없음
	공원 및 녹지	1,008,694	1,130,040	하천구역 결정에 따른 지구계 변경,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철도부지 계획 * 면적 증가 : 121,346㎡ (하천구역변경 : 감 225,575㎡, 허용기준 변경 : 증 355,559㎡, 철도부지 계획 : 감 8,638㎡) * 원충저류시설(1,775㎡) 및 신설양수장(1,000㎡) 변경없음
소 계		1,189,890	1,308,621	* 면적 증가 : 118,731㎡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사업기간은 2년 연장

- 변경된 토지이용 계획은 세부사항 검토 후 재심의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 4.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주변 화력발전소 증축

### 가. 제안사항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주변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주변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2018년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18.11.28.)에서 보류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보류사유 :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검토 위한 객관적·과학적 자료 보완 후 재검토 필요
- 그간 추진과정
  - ‘18.10.12. 허가신청(\*\*\*\*→\*\*\*\*)
  - ‘18.10.15. 반려(\*\*\*\*→\*\*\*\*)
    - \*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지자체 의견 필요
  - ‘18.11.19. 허가신청(\*\*\*\*→\*\*\*\*)
    - \*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18.10.29.) / 연산호 관련의견 없음
    - \* 서귀포시 의견 : 어촌계 및 마을 동의를 얻는 조건하에 문화재위원회 논의 필요
  - ‘18.11.28.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보완 필요) 결정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번지 외
  - 지정일 : 2004.12.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남제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10번지
  - 사업내용
    - 사업부지면적 : 31,268㎡ (남제주발전본부 전체 부지면적 : 131,479㎡)

- 취수로 증설 375m(기존 420m), 배수로 증설 395m(기존 395m)
- 해수냉각수 취·배수로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기존	신설	
규격	Φ2,400	Φ1,800	
굴착규모	·취수로 : 420m ·배수로 : 395m	·취수로 : 375m ·배수로 : 395m	연장 등 변동가능
재료	콘크리트	콘크리트	
시공방법	Semi-Sheild	Sheild TBM	해저터널
발생 온배수량	26,000t/h	6,000t/h	기존 대비 23%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6.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도 전력수급 불안해소를 위해 정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17.12월)에 긴급설비로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나, 연산호 군락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수온변화 및 부유물 발생 등으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2018년 제11차 위원회에 제출된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0.12.)

- 본 건은 제주지역 전력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남제주 발전 본부 내 기존발전소 철거 부지에 신규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냉각수 취수 및 용수를 배출하는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 사항임.
- 신설하고자 하는 취수구 및 배수구의 위치는 육지로부터 각각 375m, 395m 떨어진 곳으로서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제주 연산호 군락지를 포함하거나 매우 인접해 있고, 취수구 및 배수구 건립 공사 시 건축 개발에 따른 부유물질 발생 및 물리적인 공사로 인한 산호 군락의 일부 파괴가 우려되며, 설립 후에도 배수구에서 배출되는 온수에 의한 해수 수온 상승에 의해 인접한 산호 서식지에서 생태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취수구 방향에서는 천연기념물 제457호인 긴가지 해송 (Myriophathes lata)이 서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건립공사로 인한 영향

존재 시 서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산호의 서식은 수심 20~30m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는 바, 취수로 및 배수로의 굴착 깊이가 이 범위에 가까워 산호 서식에 미칠 영향이 또한 우려됨.

-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취·배수구 건립 후 운영 시 취수를 위한 음압, 배수시 물을 배출하는 양압 및 온수 배출에 대한 정확한 영향 평가는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취수로 및 배수로 건설 및 운영이 산호 서식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현지 확인 및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0.16.)**

- 사업지역 주변 연산호 군락지 현황 및 중요도
  - 연산호 서식지 서쪽 군락지는 송악산 해역, 형제섬, 화순연안 직벽을 중심으로 상호 생태연결고리를 형성하며, 개체군이 유지되고 있고, 취·배수구 중간지점 바로 아래 직벽에 수중아치모양의 암초가 있는데 이 지역이 core habitat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한국종합에서 제출한 연산호 자료는 8개 정점에서 수행되었으나 13종으로 보고하며, 분류군별 정량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고, 랜덤 샘플링, 반복수 미확보 등 향후 정확한 온배수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온배수 영향 예상
  - 한국종합의 보고서에서 수온 2℃ 추가상승을 예상했으나 실제 상승수온의 정확한 수치와 확산범위의 정확한 경계선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생태전문가로서 현 생물상 자료현황을 기반으로 예상할 때,
    - 아열대성 돌산호류 증가 패턴 가속 → 연산호류 감소(경쟁적 상호 작용+수온영향)
    - 맨드라미 산호류(저수심대 우점종 위주) 생물량 감소
    - 우점종 교체 → 군집구조 변형 → 천연기념물 제442호 서부권 생태계 변동(온배수의 장기적, 누적효과 기인)
    - 종다양도 감소 및 절대 생물량 감소 예상
    - 보호대상종(특히 맨드라미 산호류)의 국지적 소멸 가능성 증가
- 대책방안 제안 : 사업 시행의 경우
  -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표준방법인 BACI-paired series 디자인 적용 및 분석 경험이 있는 해양생태 전문연구진에 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온배수 배출 이전부터 배출 후 최소 3년간, 공사 이전자료와 공사중 영향과약 1차년 자료, 온배수 단기적 영향과약 2차년 자료, 누적영향과 종합 보고서 및 향후 대책 마련 3차년 자료)
  - 공사기간의 부유사 발생을 염려로 일부 보호종(긴가지해송 등)의 이식은 실제 성공률이 매우 낮아 무의미함.

(\*\*\* 제주도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0.12.)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남제주발전소의 취수구 주변해역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온·배수구 주변 해역에는 연산호류보다 돌산호류인 빛단풍돌산호와 거품돌산호 등 아열대해역에서 서식하는 종들의 서식 범위가 확장하여 분포하고 있음.
- 사업예정 주변해역은 온·배수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수유동이 활발하여 주변해역으로 열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고 해조류상이 점차 감소되어 저서생물상 분포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취·배수구 관거 공사가 육상부에서 굴착 후 해양부를 터널로 관통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부유사 발생은 감소하고, 온배수 취·배수시 해수에 투입되는 거품 제거제 및 생물부착방지제 등 화학약품 사용계획은 없겠지만,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해 주변 이동성 생물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제주도의 암반 특성상 작업 공정에 의한 미세한 암반 균열로 부유입자가 용출될 수 있음.
- 보완사항으로 현재 문헌상이나 현장 조사에 발견되고 있는 범정보호종에 대한 서식밀도, 면적, 저질상태 및 주변 해역의 갯녹음 면적 등을 산정하여 이 결과로 범정보호종의 보존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예정지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결과(시뮬레이션 등)를 검토한 후에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저감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 결과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연산호군락지에 대한 영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됨.

(\*\*\*\*\* 의견 / 2018.11.19.)

- 사업시행자(한국남부발전(주))가 주변 어촌계 및 마을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하에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완사항 (보고서 발췌)

- 취·배수구에 발생하는 음압과 양압에 따른 영향검토(보고서 p 64-65)
  - 기존 발전소의 취·배수구 유속은 0.5m/sec이며 신규 취·배수구 유속 0.152m/sec로 취·배수구에 미치는 양압 및 음압으로 계산하면은  $\pm 0.00012$  bar의 변화를 가짐. 이는 수치모의실험에서 온배수배출에 따른 부하량을 부피로 환산 할 경우 조사지점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 지역 평균 조류유속 0.5 m/sec 에비해 매우 작아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수치모의실험에 의하면 배출구로부터 1℃확산범위가 반경 2km내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배출수 수온이 7℃임을 감안하면 너무 작게 평가된 것 같음  
(보고서 p 211-328, p 59-62)

→ 금번 수치모의실험은 EFDC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국외 및 국내 학계에 검증된 수치모의모델이며, 실측자료로 검증하여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수치모의하였음.  
(세부 온배수 확산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심별, 온도별 최대확산 범위에 대하여 보완하였음)

○ 저감방안에 대하여 공사시 부유사발생에 대하여 잘 기술되어 있으나 운영시 온배수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이 부족함(보고서 p 71-75, p 329-335)

→ 금번 남제주 복합화력 발전소는 기존 운영 중이던 노후 내연발전소를 폐지하고 동 부지에 건설되는 청정LNG발전소로 부지가 협소하여 타 발전소 운영시 온배수 저감방안인 저류조 및 도수로를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타 발전소에 설치된 저류조, 도수로 등의 온배수 저감방안 효과도 0.003℃ 이하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어, 운영 중인 온배수 저감시설 통과 전·후 별도의 수온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발생된 온배수는 최대한 재활용(노천탕 및 인근 온배수 필요지역에 공급)을 계획하여 발생량을 최소화토록 계획하였음.

○ 연산호 출현자료를 정량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보고서 p 77, p 82)

→ 금번 연산호 조사는 대형저서동물 및 어류 등 해양생태계 전반조사를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로 연산호 출현자료를 정량적인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였음.

- 이에, 해당 해역의 연산호 서식현황을 조사한 이력인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출현현황을 청문조사 하였음.

- 추가로 해양공사 전·중·후 연산호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계획하였으며, 예측치 못한 영향이 발생 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저감방안을 적극 이행하겠음.

○ 조사지점에 대한 명확한 추가 자료 제시 필요(보고서 p 3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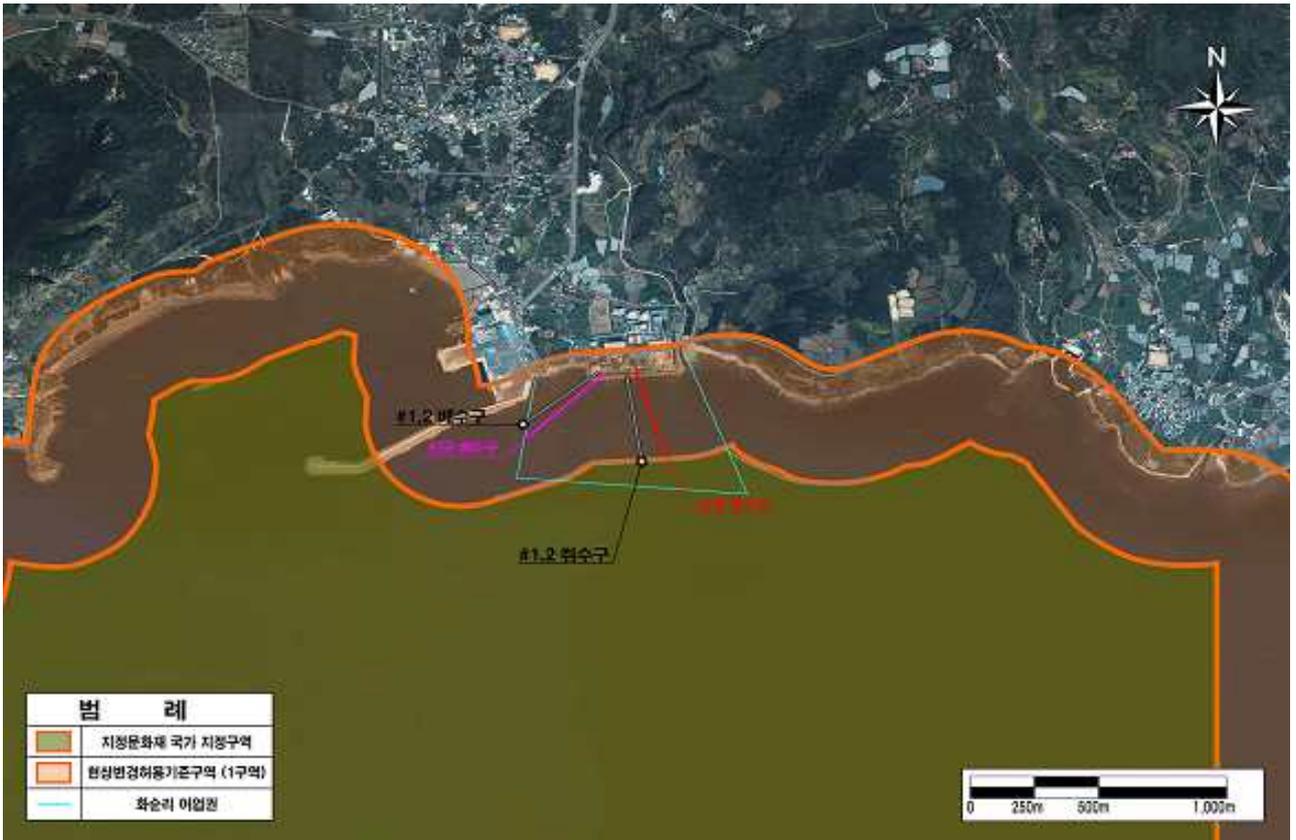
→ 현황조사지점에 대한 지점 및 현황사진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음.

○ 인용된 자료가 미흡하여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는 영향여부를 알 수 없음  
(보고서 p 4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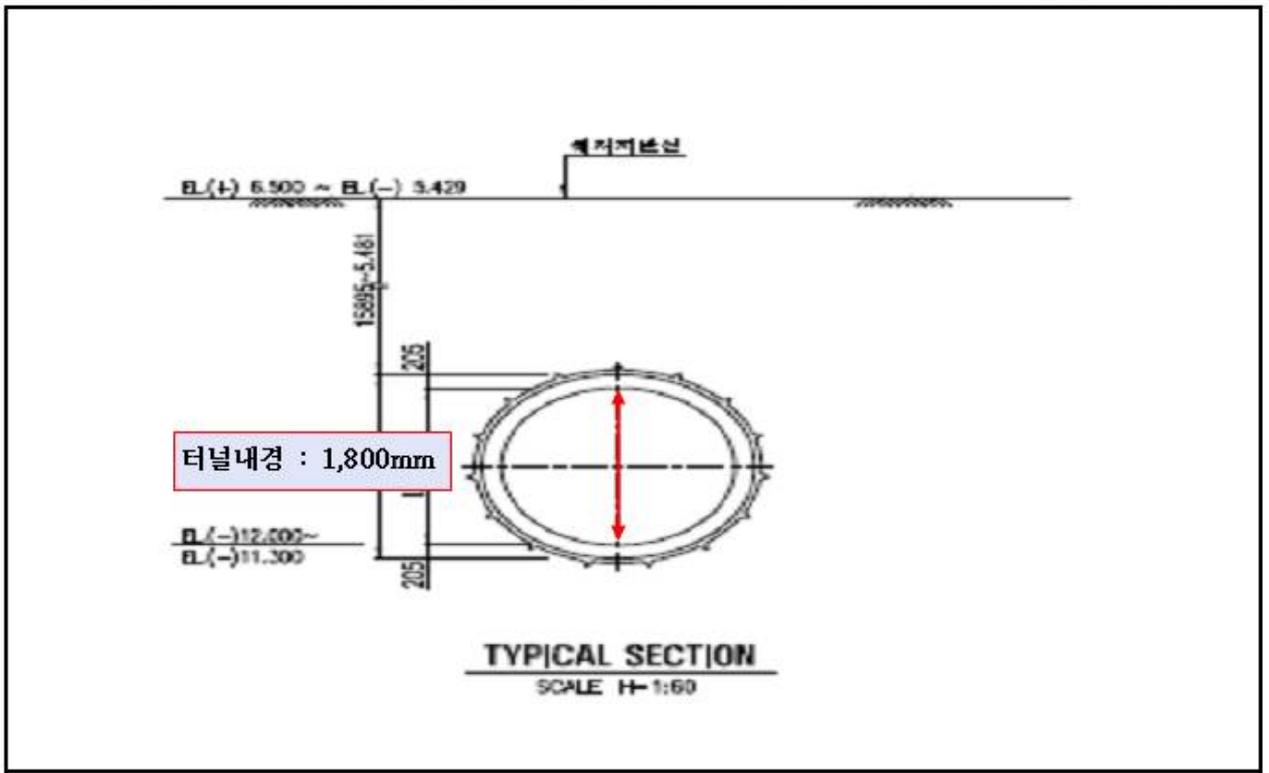
→ 연산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자료 부족으로 정량적인 분석 및 영향예측에 가장 유사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추가로 첨부하여 보완하였음.

※ 참고자료

□ 문화재구역과 사업지구 위치도



□ 해수냉각수 취·배수 터널 조감도 및 터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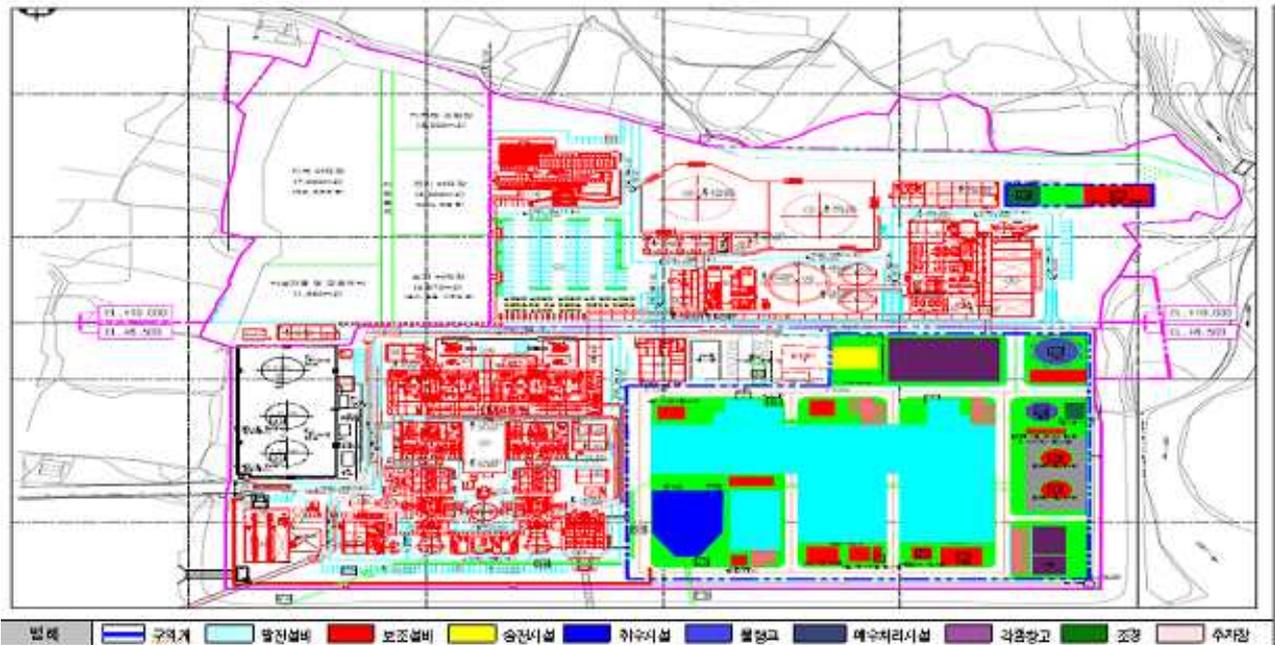


□ 신규 복합화력발전소 (구 발전소 2기 폐기 부지)



※ 기력발전소('70), 내연발전소('80)

□ 건물 배치계획도(신규 조성부지 : 하늘색 부분)



바.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소위원회 구성, 허가여부 결정 후 위원회 보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527-7번지
  - 사업내용 : 1층, 면적 98.49㎡, 최고높이 6.85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2.28.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9m 이격(1구역)
  -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주변 1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구역으로부터 9m의 위치에 근접하고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2.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527-7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한 건으로 주변에 2010년 허용기준 제정이전 단독주택과 공장

건물들이 있음.

- 그러나, 철새도래 및 서식하는 평강천 문화재구역의 허용기준 1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어 철새 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

**(\*\*\* 前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1.23.)**

- 부산 강서구 강동동 평강천변에서 9m 이격된 부지(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임.
- 건물 규모는 면적 98.49㎡, 최고높이 6.85m 이며, 주변은 5m도로변으로 단독주택이 산재함.
- 철새가 도래 및 서식하는 평강천 문화재구역의 허용기준 1구역에 분포하는 전답은 철새의 안전한 서식을 위한 완충지대로서 철새도래지의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택건물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신축은 철새의 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의견 / 2018.11.21.)**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에 해당되며,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신청 건으로 연면적, 높이 등을 주변 환경과 고려했을 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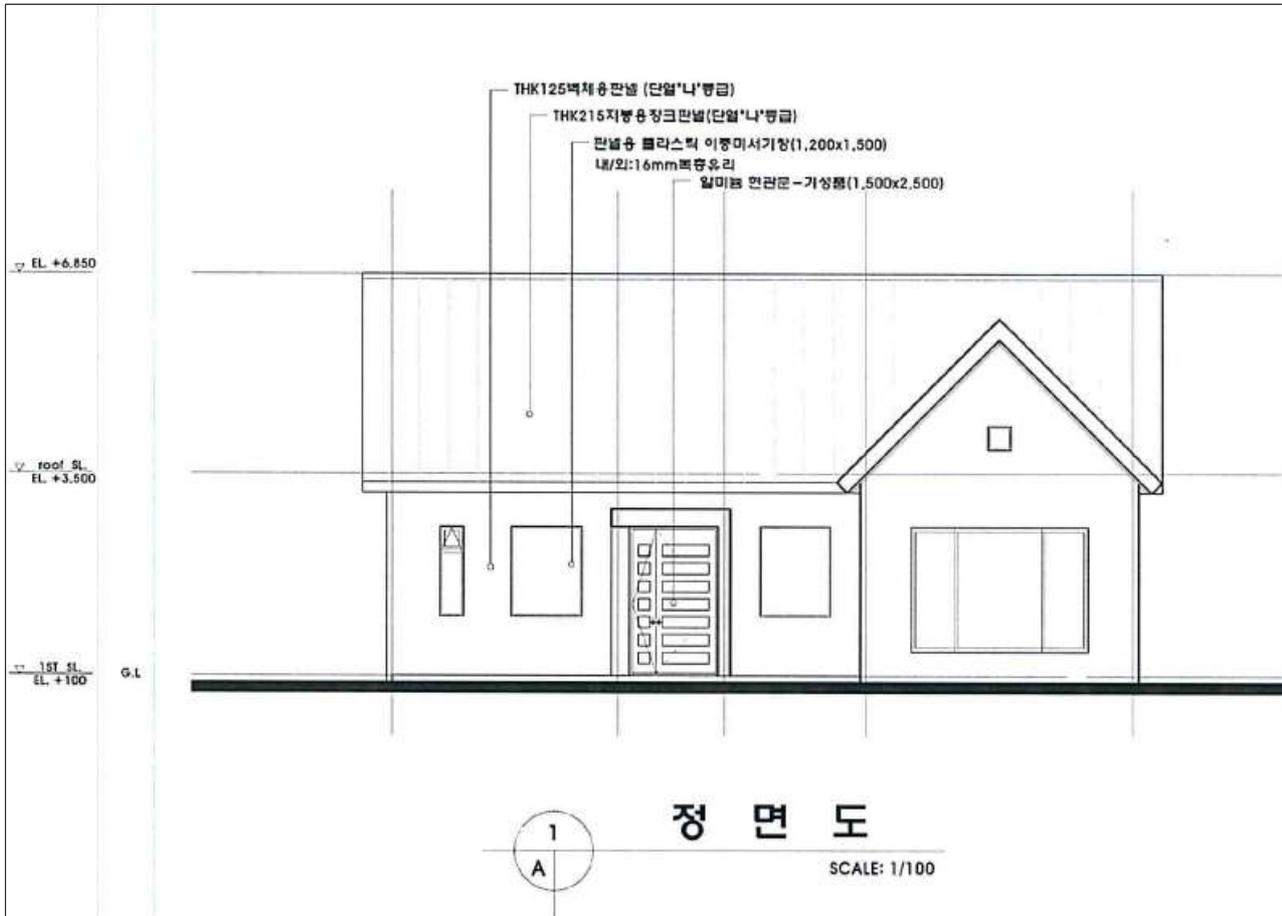
□ 사업예정지 위치도



□ 사업예정지 위치도



□ 건물 정면도 (높이 6.85m)



바. 의결사항

○ 부결

- 철새도래·서식환경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1명, 부결 8명

## 6.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통해 보호구역을 조정(필지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18. 1. 4. 2018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 '18. 6.10. 2018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위원회(1차) 개최 (적정성 검토대상 선정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등 65건)
  - '18. 7. 3.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대상 알림 및 기초자료 제출 요청 (문화재청→지자체)
  - '18. 7.13.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기초자료 제출 (안동시 → 문화재청)
  - '18. 7.18. 2018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위원회(2차) 개최 (적정성 검토대상 확정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등 4건)
  - '18.10.12.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8. 9.19.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필지조정 검토(문화재청 조정(안))
  - '18.10.30. ~ 11.28.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예고(관보공고-제출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번지
  - 지정일 : 1966.1.13.
- (3) 신청내용 :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2필지 561㎡

(단위 : ㎡)

소재지	기 지정(보호구역) 면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면적			보호구역 해제 신청면적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후 면적		
	필지	지적 (m <sup>2</sup> )	지정 면적 (m <sup>2</sup> )	필지	지적 (m <sup>2</sup> )	지정 면적 (m <sup>2</sup> )	필지	지적 (m <sup>2</sup> )	지정 면적 (m <sup>2</sup> )	필지	지적 (m <sup>2</sup> )	지정 면적 (m <sup>2</sup> )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9	10,986	3,372	1	7	7	1	1,438	554	9	8,345	2,825

(4) 조정(필지조정)사유

- 문화재보호구역 외 필지(용계리 744번지)해제 및 보호구역 내 미지정 필지(용계리 247-4번지)추가지정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보호구역 내 미 지정 필지 추가지정 및 문화재 보호구역 밖 지정필지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0.12.)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필지조정을 위해 신청한 건으로 보호구역 내 미지정 필지(1필지 7m<sup>2</sup>)를 추가지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밖 지정필지(1필지 554m<sup>2</sup>)를 해제하고자 하는 건으로 보호구역 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바.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대상과 범위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08.10.9.고시)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244-1 학	5,098	1,111		국(건설부)	
		744-1 도	671	523		국(건설부)	
		229-1 답	123	89		국(건설부)	
		231 유	228	228		국(건설부)	
		230-3 전	270	202		국(건설부)	
		232-1 전	282	103		국(건설부)	
		230-4 도	18	8		국(건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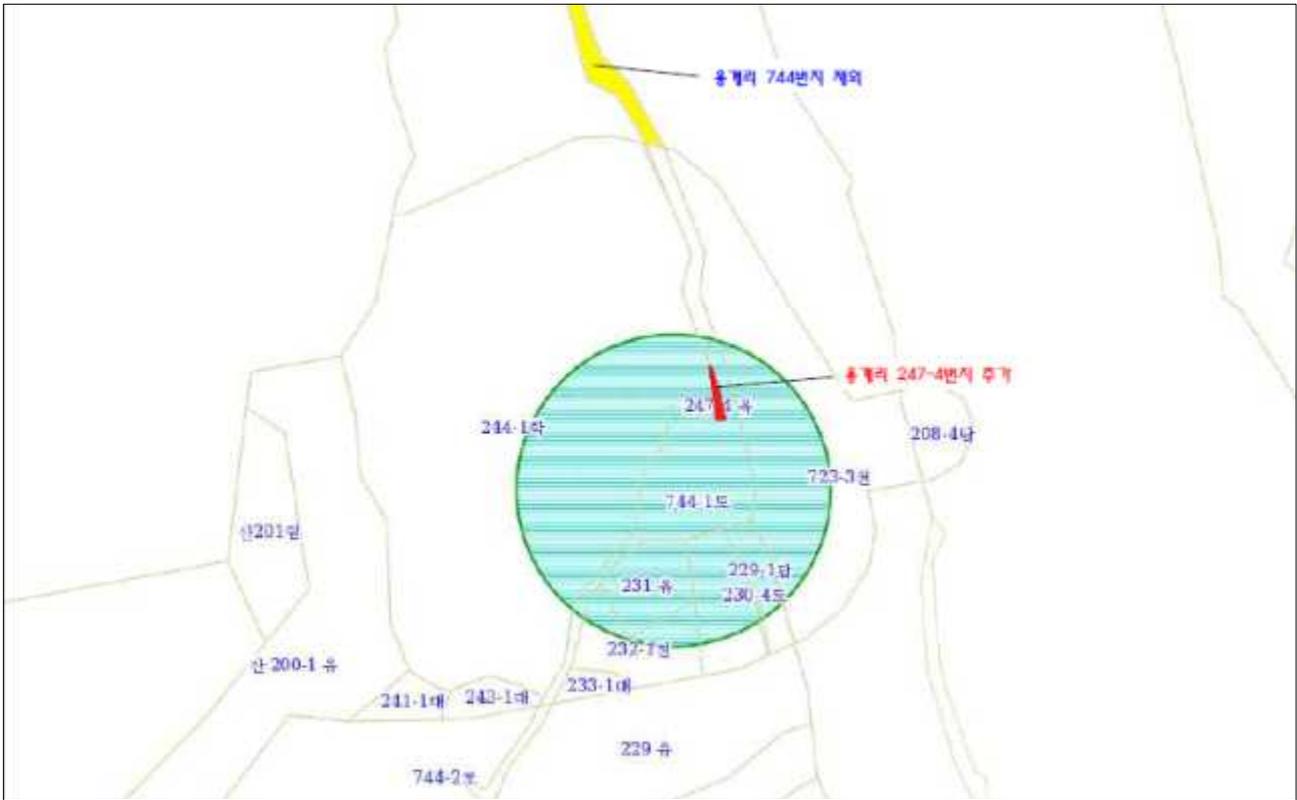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723-3 천	1,648	554		국(건설부)	
		744 도	2,648	554			
<b>계(보호구역)</b>		<b>9필지</b>	<b>10,986</b>	<b>3,372</b>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244-1 학	5,098	1,111		국(국토교통부)	
		744-1 도	671	523		국(국토교통부)	
		229-1 답	123	89		국(국토교통부)	
		231 유	228	228		국(국토교통부)	
		230-3 천	270	202		국(국토교통부)	
		232-1 전	282	103		국(국토교통부)	
		230-4 도	18	8		국(국토교통부)	
		723-3 천	1,648	554		국(국토교통부)	
		247-4 유	7	7		국(국토교통부)	
<b>계(보호구역)</b>		<b>9필지</b>	<b>8,345</b>	<b>2,825</b>			

붙임 : 문화재보호구역 현황 및 조정(필지조정) 관련 자료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현황



사.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9명

## 7.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553호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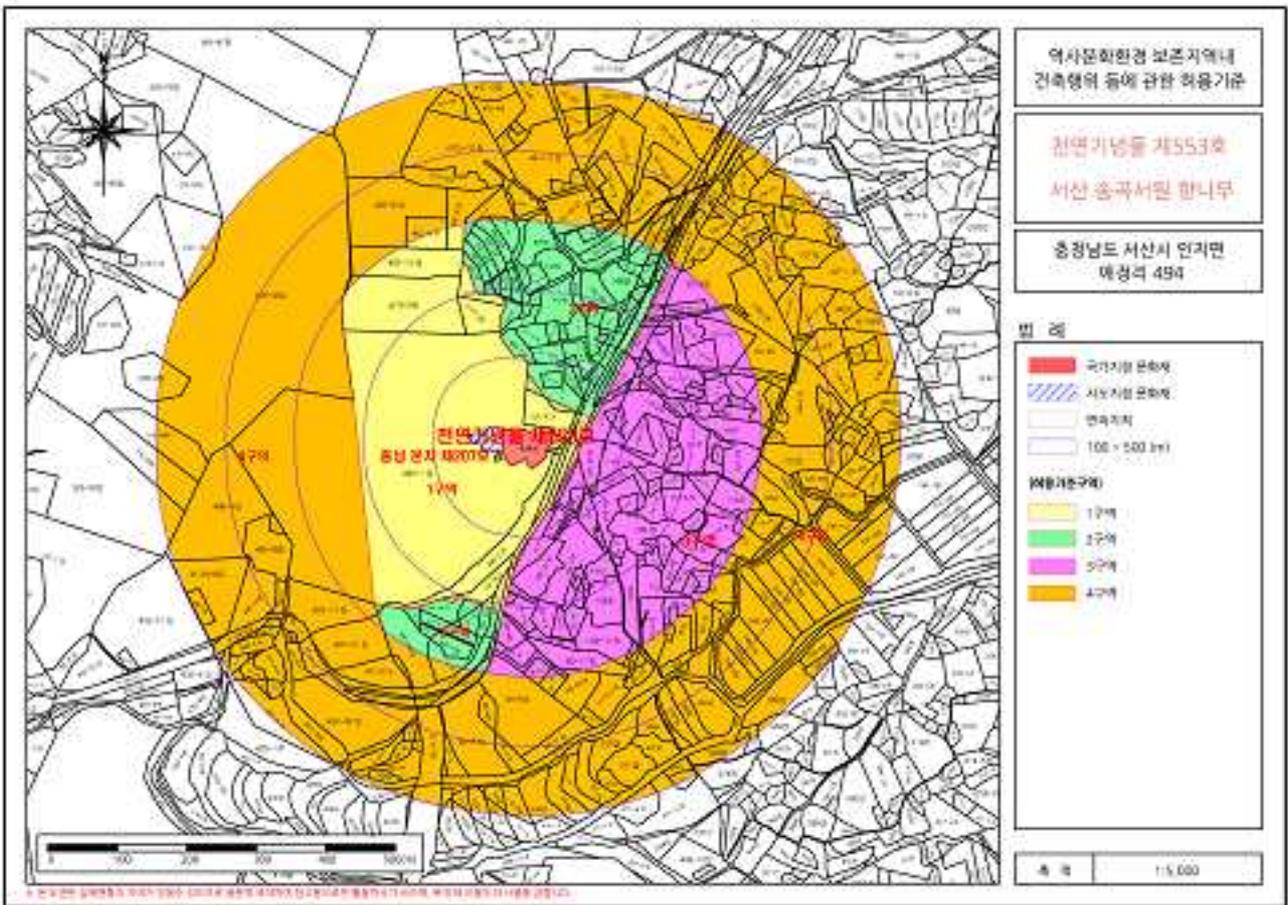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3호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494번지
  - 지정일 : 2018.5.3.
- (3) 신청내용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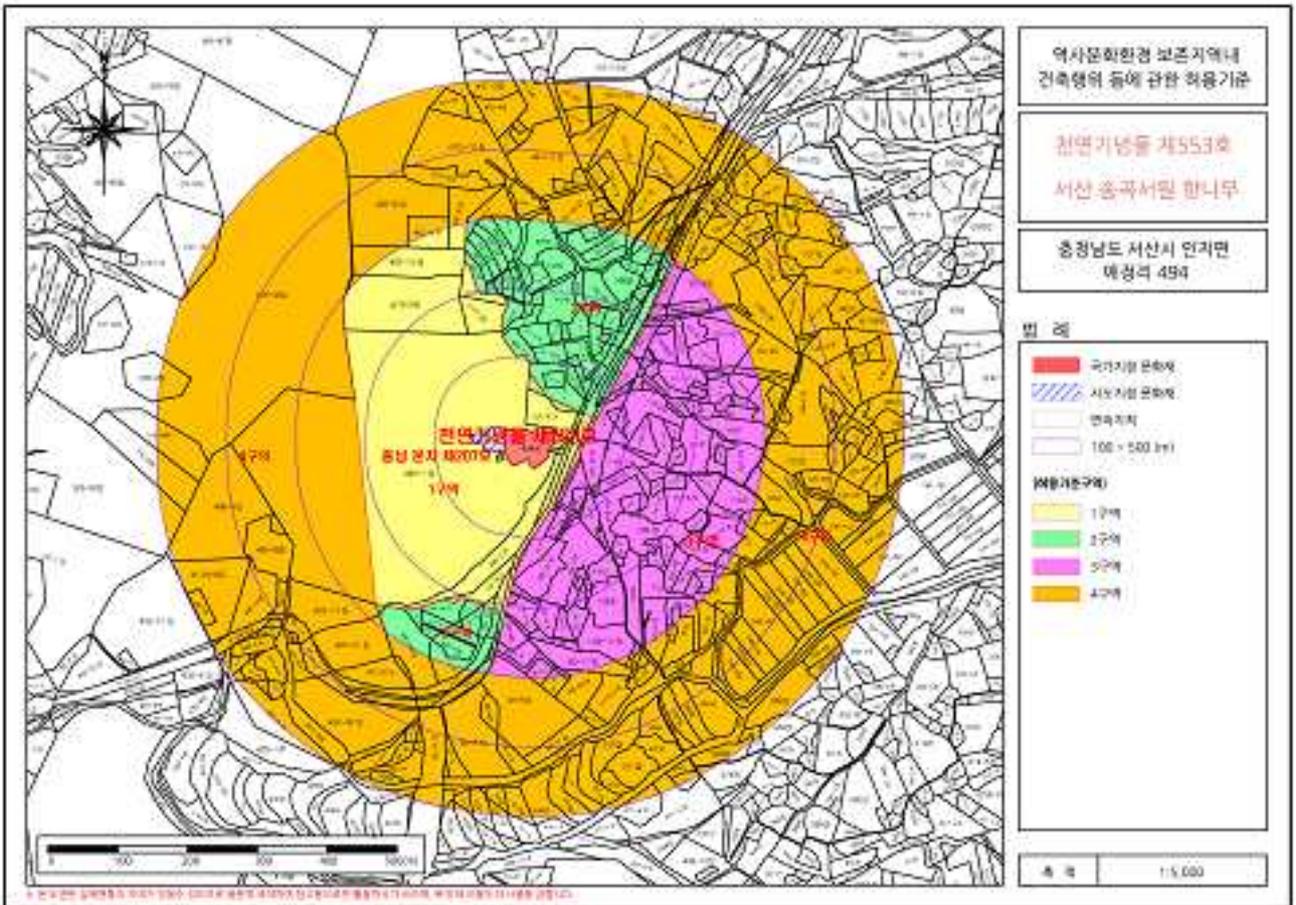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라. 검토의견 (\*\*\*\*\*)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전 충청남도 기념물 제170호 송곡사 향나무 허용기준은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300m까지 1구역, 3구역, 4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서산시 신청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30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기 고시된 1구역 일부 지역과 300~500m 구역을 4구역으로 설정하였음.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주변은 보호구역과 1구역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어 서산시 신청안대로 설정해도 향나무 보존관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공통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구분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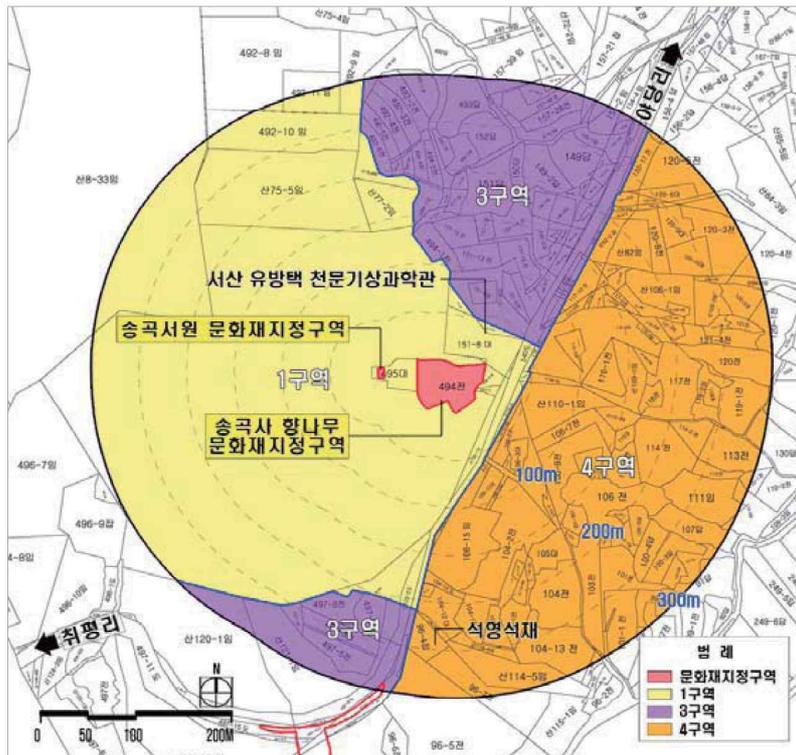


마. 허용기준 기 고시 현황

- 충청남도고시 제2011.12.20., 관보 제2011-2144호 도지정 현상변경허용기준

### 8. 송곡서원, 송곡사향나무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회개별심의</li> <li>○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li> <li>○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영향검토 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ul>	



## 바.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2.5.)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전 충청남도 기념물 제170호 송곡사 향나무 허용기준은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300m까지 1구역, 3구역, 4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1구역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 3구역 : (평지붕)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경사지붕)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 4구역 : (평지붕)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경사지붕)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
- 금번 서산시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30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기 고시된 1구역 일부 지역과 300~500m 구역을 4구역으로 설정하였음.
- 서산시 신청안대로 설정해도 향나무 보존관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으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9명

## 8.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07번지 일원
  - 지정일 : 1968.5.2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31-56번지
  - 사업내용 : 기존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

구분	기존	신축	비고
대지면적	668㎡	668㎡	
건축면적	119㎡	133.09㎡	증 14.09㎡
연면적	119㎡	207.65㎡	증 88.65㎡
구조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높이	4.5m(1층)	7.05m(2층)	증 2.55m
지붕형태	경사지붕	평지붕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87m 이격(1구역)
  -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87m 이격된 1구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1.23.)**

- 신청지역은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의 상부 지역에 대한 조망경관 관리 측면에서 1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현재 1~2층의 주택들로 이루어진 거주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임.
- 신청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서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으로, 주변 건물의 층고 등을 감안할 때, 패류화석 산지의 상부 지역 조망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돌담의 재축과 함께 계획된 노출콘크리트 옹벽의 규모가 다소 과다하여, 주변 건물과의 부조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1.23.)**

- 신청사업은 해변가에 노출되어 있는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판단됨. 단, 공사 중 터파기가 이루어질 경우 화석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임.

**(\*\*\*\*\* \*\*\*\* 의견 / 2018.11.13.)**

- 신청사업은 인근 지역에 있는 기존 건물(28m 인근에 2층, 50m 인근에 4층)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돌담 및 콘크리트 옹벽은 현재 돌담높이로 설치
- 터파기 공사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고 화석발견 시 즉시 신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1, 조건부가결 8명

## 9.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내 모래포집기 및 바람골 설치

### 가. 제안사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내 모래포집기 및 바람골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내 모래포집기 및 바람골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일원
  - 지정일 : 2001.11.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모래포집기 및 바람골 설치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305-1번지
  - 사업내용 : 모래포집기·바람골 설치 및 기존 바람골 보완
    - 사업 목적 : 신두리 해안사구 내 2차 사구의 모래 침식 및 유실방지

구분	설치위치	비고
모래포집기	·1차 사구 앞 해변(배수로 인근) ·2차 사구 2부능선 ·2차 사구 5부능선(기존 1~2열 사이 공간) ·2차 사구 정상	L=300m H=0.48~1m
바람골	·1차 사구 북쪽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6.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문화재구역 내에 모래포집기 및 바람골을

설치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2.11.)

- 태안군은 지난 몇년간 신두리 사구의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해왔으나 사구의 생성기작에 대한 연구가 아닌 모니터링 연구만을 수행하여, 현재 사구 내 사질 퇴적물의 이동과 사구의 형성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임. 이러한 상태에서 모니터링 연구만을 수행한다면 사구의 보전을 위한 관리 대책의 수립은 어려움.
- 기 설치된 모래포집기에는 모래가 쌓여있으나, 이러한 모래의 퇴적이 어느 정도 모래포집기의 영향인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래의 공급량과 이 지역으로부터의 유실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 현재 해안가에 위치한 1차 사구에 기존에 바람골 2개를 설치하여 현재 사구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바람골의 효과를 이해하기 어려움. 현재 바람골에서 내륙 쪽으로 일부 모래가 쌓여 있으나, 이러한 퇴적은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사구의 형태가 변하게 하는 결과를 낳음. 또한 기존의 바람골은 모래의 공급이 주로 북북서 방향으로부터 부는 방향에 의한 모래의 공급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구를 훼손함.
- 따라서 사구의 정확한 퇴적기작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의한 충분한 해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시 바람골을 만들기 위해 사구가 훼손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 태안군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사구의 형성과 모래의 운반과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2.11.)

- 2차 사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모래포집기는 모래의 포집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사구 방향에서 육지로 향하는 바람에 따라 이동·상승하는 모래를 포집기 후방에 퇴적시키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일간 혹은 계절간 방향이 변하는 바람에 의한 모래의 이동, 즉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향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경우, 2차 사구에서 전사구 방향의 모래 이동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함. 결과적으로 사구의 활동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차 사구 지역에 추가 모래포집기의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기존의 포집기도 가능하다면 제거하는 것이 자연유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모래의 원활한 이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전사구를 절단하여 바람골을 설치하는 것은 사구의 주 구성 요소인 전사구의 자연상태를 훼손하는 것으로, 천연기념물의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더 이상의 훼손은 방지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기존에 대규모로 설치된 바람골도 원형 복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사구 전면 해변에 설치 예정인 모래포집기의 경우 과거 설치하였던 포집기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이 경우는 바다로부터 육지로 공급되는 모래의 유실을 저지하여 전사구를 포함하여 사구에 모래의 양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자연유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라는 부정적인 점이 있으나 신두사구의 보존에 유리한 측면도 있음.

(\*\*\* 신두리 해안사구 모니터링 용역 책임연구원 의견 / 2018.10.20.)

**(1) 전사구 바람골 보완 및 신규 설치**

- 현재 전사구 부분에는 '17~'18 동계에 만들어진 2개의 바람골이 있으나, 설치 당시의 시기가 늦어 바람골을 통한 모래의 유입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골을 통한 모래의 유입이 어느 정도는 일어났기 때문에, 해변의 모래가 바람골을 통해 사구지대로 유입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해변의 모래가 해안사구로 유입되는 시기는 동계이므로, 늦어도 11월 이전에 바람골이 설치되어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존에 있던 2개의 바람골이 메워지고 있기 때문에, '18~'19 동계에는 기존 바람골을 다소 확장하는 방향으로 보강 공사를 하고, 북쪽에는 신규로 바람골을 설치하되 바람골의 축을 해안선과 직각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서풍의 방향을 고려하여 2차 사구 쪽으로 축을 기울여 조성할 것을 건의함.

**(2)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남쪽 경계 부분 전면의 전사구에 모래포집기 설치**

- 문화재구역 남쪽 경계 부분은 전면에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과 배후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유수의 영향을 받아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임. 하지만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침식이 일어나고 있던 해변 부분에 모래가 부분적으로 퇴적되어 고도가 높아졌고 초기사구 형태의 지형이 자리잡은 상태임.
- 따라서 이 부분에 길이 약 100m에 걸쳐 모래포집기를 설치하면 침식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포집기의 설치 위치는 전사구와 해변의 경계를 기준으로 볼 때 전사구 말단부에서 전사구 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 즉 해변에 설치해서는 안 됨.

**(3) 2차사구 내 신규 모래포집기 설치**

- 2차사구 지대에는 겨울철에 모래가 침식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열의 소규모 모래포집기를 설치하였음. 대부분의 모래포집기는 모래의 이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북쪽 끝 부분에서는 포집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음. 또한 작년에 설치된 모래포집기는 대부분 상단까지 묻혀 효과를 더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함.

- 2차사구 정상부에 설치되었던 모래포집기는 수명이 다 했으므로, 현재의 위치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신규로 모래포집기를 설치해야 함.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북쪽 하단부에는 골짜기 부분에 높이 1.5m 내외의 포집기를 설치하고 작년에 사용했던 그물보다 더 조밀한 그물망을 설치해야 함.
- 마지막으로 2차사구 중앙부의 1열과 2열 사이에 신규로 모래포집기를 설치하여 빈 공간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4) 전망데크 침식에 따른 보강

- 대상지 북쪽의 전망데크 하단이 바람에 의해 침식되어 구조물이 드러나 있거나 공중에 떠있는 것이 관찰되는데, 모래를 채워 보강할 필요가 있음. 전사구에 바람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래를 사용하여 채우는 것을 권장함.

#### (\*\*\* 의견 / 2018.12.11.)

- 신두리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하여 그동안 해안사구 생태계 복원과 목재 데크 탐방로 개설 등 사구 복원·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나, 나지 상태의 2차 사구 침식으로 인한 모래유실을 방지할 모래포집기 및 바람골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 2017년 기 설치된 모래포집기 및 바람골의 사구보존 효과가 2018년 신두리 사구 모니터링 연구용역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며, 모래포집기 및 바람골의 추가설치로 사구보존 기능 극대화 및 모래유실 방지가 절실히 필요함.

#### 바. 의결사항

##### ○ 부결

- 설치효과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 후 설치여부 검토 필요

#####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 10. 「담양 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 가. 제안사항

「담양 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담양 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123번지(대) 등
  - 지정일 : 2008.5.2.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46번지
  - 사업내용 :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 저장고 규격 : 가로4m, 세로2.5m, 높이2.4m
    - 재질 및 구조 : 조립식 우레탄 판넬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5.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 신청 사업은 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주택용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2.14.)

- 신청 사업은 명승 제40호 「담양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기존 주택 인근에 농생산품을 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10m<sup>2</sup>)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규모와 주변 환경(식생 위요경관) 등을 감안할 때,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의견 / 2018.12.13.)

- 지난 1996년부터 담양 소쇄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민가, 전) 매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4가구만이 거주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신청인의 주택은 소쇄원의 핵심구역(제월당, 광풍각)을 지나 관람객의 동선에 벗어난 지역에 있으며, 특히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은 농촌지역의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서 10m<sup>2</sup>의 최소 규모로 신축함에 따라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 11. 「담양 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산물 판매장 신축

### 가. 제안사항

「담양 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산물 판매장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담양 소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산물 판매장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123번지 등

○ 지정일 : 2008.5.2.

(3) 신청내용

○ 사업명 : 농산물 판매장 신축(근린생활시설)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77번지(전)

○ 사업내용 : 농산물 판매장 신축

- 대지면적 : 66m<sup>2</sup>

- 건축(연)면적 : 33m<sup>2</sup>

- 구조 : 1층(높이 5.1m)경사지붕, 한식목구조, 맞배지붕, 정면2칸, 측면 2칸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6.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사업예정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인 소쇄원 입구에 위치하며, 농산물 판매대 설치를 위한 전통한옥목구조 건물로 높이 5.1m(1층)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2.14.)

- 명승 제 40호 담양 소쇄원은 우리나라 선비의 고고한 품성과 절의가 엮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심성을 수양하는 곳일 뿐 아니라,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요소가 결합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 본 건은 역사문화명승의 중점관리지표 중 “장소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바, 금번 소쇄원 입구에 농산물 판매장의 신축은 소쇄원의 장소성을 유지, 관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의견 / 2018.12.13.)

- 지난 1996년부터 담양 소쇄원의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민가, 전) 매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4가구만이 거주하고 있음.
- 신청인은 소쇄원 입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특산물(1차 가공품 포함)을 판매를 하고 있으나 문화재 경관, 주변 환경과 부조화 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신청인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자 함.
- 소쇄원 문화재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등 생활상의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함은 틀림없으나, 소쇄원 초입부에 판매장 입점, 높이 5.1m 맞배지붕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문화재 조망권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 신청인은 2009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채 개축(건축면적 93.96㎡, 기와)을 위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적이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조망권 및 명승경관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9명, 보류 1명

##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8-12-12

###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3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 등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철새 이동 및 유전자 다양성 연구 ○ 허가사항 : 매 등 포획 후 추적기부착 및 시료채취 방사 ○ 개체수 : 15개체(매 5, 참매 5, 새매 5) ○ 포획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영암군 ○ 포획기간 : 2018.11.28.~2019.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원앙 전시 및 증식 ○ 허가사항 : 원앙 이송 및 사육 ○ 개체수 : 2개체(기 허가자(박종국)으로부터 분양) ○ 사육장소 : 조류관리장(인천 중구 을왕동) ○ 사육기간 : 2018.11.28.~2023.11.27.	<허가>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황새의 유전학적 연구 및 유전자 다양성 연구 ○ 허가사항 : 황새 조직 및 혈액채취 후 DNA 추출 ○ 개체수 : 23개체 ○ 허가기간 : 2018.11.29.~2018.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큰고니 폐사체 소각 ○ 허가사항 : 폐사체 소각 ○ 개체수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박영환 ○ 신청목적 : 원앙 전시 및 증식 ○ 허가사항 : 원앙 이송 및 사육 ○ 개체수 : 12개체(롯데아쿠아리움 기 허가개체 분양)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696-21</li> <li>○ 사육기간 : 2018.11.29.~2023.11.28.</li> </ul>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수달 등 폐사체 소각</li> <li>○ 허가사항 : 폐사체 소각</li> <li>○ 개체수 : 3개체(수달 2개체, 수리부엉이 1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수달의 행동반경 및 서식지 선택특성에 대한 학술연구</li> <li>○ 허가사항 : 수달 포획 및 무선발신기 부착, 시료채취 후 방사</li> <li>○ 개체수 : 지역별 1개체(총 4개체 이하)</li> <li>○ 포획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중구 신천 및 지류하천 일대</li> <li>- 대구광역시 남구 신천 및 지류하천 일대</li> <li>- 대구광역시 북구 신천 및 금호강 일대</li> <li>-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 및 지류하천 일대</li> <li>-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천 및 지류하천 일대</li> </ul> </li> <li>○ 허가기간 : 2018.12.4.~2019.3.29.</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유전자분석 및 전시교육 활용</li> <li>○ 허가사항 : 큰소쩍새 시료채취 후 표본제작</li> <li>○ 개체수 : 1개체</li> <li>○ 박제일련번호 : 2018-인천-57</li> <li>○ 보관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인천 서구)</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유전자분석 및 전시교육 활용</li> <li>○ 허가사항 : 황조롱이 시료채취 후 표본제작</li> <li>○ 개체수 : 2개체</li> <li>○ 박제일련번호 : 2018-인천-57~59</li> <li>○ 보관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인천 서구)</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수달 등 폐사체 소각</li> <li>○ 허가사항 : 수달 등 소각</li> <li>○ 개체수 : 25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수리 1, 새매 3, 수달 4, 원앙 15, 참매 2)</li> </ul> </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큰고니 폐사체 질병검사 연구</li> <li>○ 허가사항 : 큰고니 부검 후 소각</li> <li>○ 개체수 : 11개체</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기간 : 2018.12.11.~2019.1.31.	
	천연기념물 제243-3호 참수리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참수리 종보존 및 전시 ○ 허가사항 : 참수리 이송 및 사육 ○ 개체수 : 1개체(기 허가자인 부산동물원 기증개체) ○ 사육장소 : 대전동물원 사육장(대전 중구) ○ 사육기간 : 2018.12.11.~2023.12.10.	<허가>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점박이물범 생태 및 유전적 특성 연구 ○ 허가사항 : 점박이물범 폐사체 부검 후 시료채취 및 표본제작 ○ 개체수 : 1개체 ○ 박제일련번호 : 2018-울산-1 ○ 보관장소 : 고래연구센터 수장고(울산 남구)	<허가>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 신청인 : *** ○ 신청목적 : 남생이 전시 및 교육 ○ 허가사항 : 남생이 이송 및 사육 ○ 개체수 : 1개체(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기증개체) ○ 사육장소 : 우포늪관리사업소 생태관(경남 창원군) ○ 사육기간 : 2018.12.12.~2023.12.11.	<허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법환항 및 대포항 정비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항과 대포항 일원 - 허가기간 : 2018.11.22.~ 2021.12.31. - 허가조건 : 대포항의 이안제는 별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서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탐방 인프라 구축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85번지 4호 - 허가기간 : 2018.11.26.~2018.12.31. - 허가조건 :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방안 수립 후 봉화군 담당부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레저시설(짚라인 등) 설치 - 사업위치 : 경남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 1길 292-16, 307-2 - 허가기간 : 2018.12.3.~2019.6.30. - 허가조건 : 문화재청 승인받은 설계로 시행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지하수 개발(1공, 깊이 : 70m, 지름 : 150mm)</li> <li>- 사업위치 :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1227번지</li> <li>- 허가기간 : 2018.12.5.~2018.12.31.</li> </ul> </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등</li> <li>- 사업위치 :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50-71번지</li> <li>- 허가기간 : 2018.12.5.~2020.12.31.</li> <li>- 허가조건 : 주변에서 서식하는 수종으로 하여 건물 차폐계획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li> </ul> </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농가창고, 버섯재배사 및 진입로 부지조성</li> <li>- 사업위치 :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979-28·30·31</li> <li>- 허가기간 : 2018.12.5.~2020.12.31.</li> <li>- 허가조건 : 3m 이상 옹벽 발생 부위는 소단을 만들어 식재계획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함</li> </ul> </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운동시설 및 휴게음식점 신축</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278-1 번지 외 1필지</li> <li>- 허가기간 : 2019.4.1.~2019.10.31.</li> <li>- 허가조건 : 건물의 외관은 갈색계열로 하고, 겨울철새 도래기간(11월~익년3월)은 피해서 시행하여야 함</li> </ul> </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농사용 성토, 높이 1m)</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1번지</li> <li>- 허가기간 : 2019.4.1.~2019.5.30.</li> <li>- 허가조건 : 겨울철새 도래기간인 11월~익년3월을 피하고, 토사 유출방지방안은 강서구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함</li> </ul> </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교육용 마장 및 목장 정비</li> <li>-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1820번지 일원(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0m)</li> </ul> </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호동 한란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li> <li>· 배수로설치 B=2.1m, H1.5m, L=100m(전석수로), 우수받이 (510*410*H400) 8개소</li> <li>· 도로포장 B=4.0~6.5m, L=105.3m(콘크리트포장 A612.7m<sup>2</sup>), U형측구 B=0.4m, H1.0m, L=20m, 우수관(PE) D=300mm, L=92.8m</li> <li>· 울타리보수 H1.35m, L=385.1m(메쉬웬스, 출입문2개소)</li> <li>· 수목제거 L=132m, B10m/삼나무 등 잡목 5년생 88주제거</li> </ul> ○ 허가기간 : 2018.11.19.~2019.11.18.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주)SK텔레콤 이동통신 기지국 안테나 교체공사</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번지 97호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m)</li> <li>- 사업규모 : 기존 안테나 교체(6기→4기)</li> <li>· 모델명 0.8/1.8/2.1/2.6-14/16-65/63-13/8-TA-15/10-6P(1기)</li> <li>· 사이즈(mm) : 350(W) X 1690(H) X 150(D)</li> <li>· 모델명 0.8L/1.8L/2.1/2.3/2.6L/XP-11/11-65/58-33/28-T0-4P-Speaker(2기)</li> <li>· 사이즈(mm) : 300(W) X 600(H) X 150(D)</li> <li>· 모델명 AAU10-3.5G-32T12L Spec(1기)</li> <li>· 사이즈(mm) : 230(W) X 970(H) X 134(D)</li> </ul> ○ 허가기간 : 2018.11.23.~2018.12.22.	<허가>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성산읍 일출로 지중화공사</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34-한도로260일원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m)</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중화굴착 814m, 맨홀 21식, 지상개폐기 2대</li> <li>· 지상변압기 7대</li> </ul> </li> </ul> ○ 허가기간 : 2018.11.23.~2019.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비자나무 양묘장 조성</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1-1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m)</li> <li>- 사업내용</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면적 4,500㎡, 경운작업 및 덩굴제거 등 지반정리</li> <li>· 비자나무 종자파종·관리 등</li> </ul> ○ 허가기간 : 2018.11.27.~2019.11.26.	
	천연기념물 제379호 천지연난대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천지연 난대림 지대 주변 임시시설물 설치공사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596-1, 596-5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m) - 사업내용 : 임시안전시설물 설치 · 돌망태형 옹벽 2구간 총54m(L=22m, 32m/ H1.0m~H2.0m) · 수목 3주 가치기 및 고사목 1주 제거 ○ 허가기간 : 2018.12.5.~2020.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377호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주변 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343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11m) - 사업내용 · 신청대지면적 200㎡, 건축(연)면적 26.4㎡ · 건물높이 3.3m(1층, 경량철골조), 진입로포장 87.95㎡ ○ 허가기간 : 2019.1.1.~2020.1.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738-10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거리 11m) - 사업내용 · 대지면적/사업면적 1,744㎡/338㎡, 건축(연)면적 98.77㎡ · 건물최고높이 4.3m(평지붕), 일반철골구조 · 성토 335.08㎡, 보강토 옹벽 37m, 콘크리트 포장 239㎡ ○ 허가기간 : 2018.12.13.~2019.10.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738-10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거리 11m) - 사업내용 · 대지면적/사업면적 1,744㎡/533㎡, 건축(연)면적 99.5㎡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최고높이 5.8m(1층, 경사지붕), 경량철골구조</li> <li>· 성토 183.4㎡, 보강토 옹벽 32m, 콘크리트 포장 384㎡</li> </ul> ○ 허가기간 : 2018.12.13.~2019.10.31.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대평늪 탐방로 확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범수면 대송리 883-1번지 (문화재구역 1구역, 2구역) - 사업내용 · 경화마사토포장(3,927.1㎡), 진입데크(50경간), 아치 목교(1식), 박터널설치(1식) 등 ○ 허가기간 : 2018.11.27.~2019.11.26.	<허가>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토요일무대 막구조물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76번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PTEE막구조물 설치(L=14m, B=11, H=6.7m) ○ 허가기간 : 2018.11.27.~2019.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03호 성주 경산리 성밖숲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가설건축물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36-1번지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15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용도(사무실), 바닥면적(112.5㎡), 경량철골조, 건축물 최고높이 4.4m ○ 허가기간 : 2018.12.12.~2019.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아우라지 베개용암 암석 채취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09-8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아우라지 베개용암 암석 채취 및 반출 · 직경 20~50cm 내외 요암 2개(원형 1개, 반구형 1개) - 허가기간 : 2018.11.21.~2018.12.7. - 허가조건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서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채취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li> <li>· 완료신고시 상세 채취 위치 및 채취 전·후 사진자료를 제출할 것.</li> <li>· 해당 암석 전시시 안내판에 암석의 출처를 명시할 것.</li> </ul>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지리산 화엄사 일원 내 보적암 포장 신설 등</li> <li>- 사업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문화재구역 내)</li> <li>- 사업내용 (1공구) 지장암 진입부 배수시설 정비 : 집수정 1개소 (1.2*1.2*1.4), 파형강관 매립(L= 13m, @ 0.8m), 기존 콘크리트포장 철거 후 재포장 A=21㎡, 개거설치(0.5*0.5, L= 2m)</li> <li>(2공구) 보적암 진입부 포장 : 콘크리트포장 A=467.4㎡ (L=96m, W=4.7*5.4), 점토블록포장(A=575.2㎡(L=104.8m, W=5.4)</li> <li>(3공구) 연기암 배수시설정비 : 개거설치((0.5*0.5, L= 291m), 중하중용 그레이팅 291개소</li> </ul> </li> <li>○ 허가기간 : 2018.11.21.~2019.6.30.</li> </ul>	<허가>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지리산 화엄사 일원 내 남악사 주변 수목정비</li> <li>- 사업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문화재구역 내)</li> <li>- 사업내용 : 남악사 후면 석축을 기준으로 폭 3m 내의 잡목 제거(제거면적 100㎡), 남악사 좌측면 단풍나무 등 5주 가지치기</li> </ul> </li> <li>○ 허가조건 : 잡목제거는 흉고직경 6cm이하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며, 단풍나무 가지치기(전정)은 수목의 고유한 형태가 보존되도록 시행할 것</li> <li>○ 허가기간 : 2018-12-11 부터 2019-06-30</li> </ul>	<조건부 허가>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5호 취부영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 허가기간 연장</li> <li>1) 기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전시 및 교육</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내용 : 칩부영이 등 사육</li> <li>· 허가개체 : 칩부영이 등 6종 32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칩부영이 1, 수리부영이 4, 흑비둘기 1, 멧황새 1, 독수리 5, 어름치 20</li> </ul> </li> <li>· 허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칩부영이 : 2013. 3. 15. ~ 2018. 3. 14.</li> <li>- 수리부영이 : 2013. 3. 15. ~ 2018. 3. 14.</li> <li>- 흑비둘기 : 2013. 4. 4. ~ 2018. 4. 3.</li> <li>- 멧 황 새 : 2013. 3. 15. ~ 2018. 3. 14.</li> <li>- 독 수 리 : 2013. 10. 22. ~ 2018. 10. 21.</li> <li>- 어 림 치 : 2013. 3. 15. ~ 2018. 3. 14.</li> </ul> </li> </ul> <p>2) 변경허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내용 : 칩부영이 등 사육</li> <li>· 허가개체 : 칩부영이 등 6종 32개체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칩부영이 1, 수리부영이 4, 흑비둘기 1, 멧황새 1, 독수리 5, 어름치 20</li> </ul> </li> <li>· 허가기간 : 2018.12.12.~2023.12.11.</li> <li>· 변경허가 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기 허가개체 사육기간 연장 및 통합관리를 위해 사육기간 조정 허가</li> </ul>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지하수 개발(1공, 깊이 : 900m, 지름 : 200mm) - 변경사항 : 깊이 450m → 900m, 기한연장 2018.9.1. ~ 9.30. → 12.31. - 사업위치 :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45-16 - 허가기간 : 2018.11.1. ~ 2018.12.31.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교량건설 - 변경사항 : 사업기한 연장 및 교량건설 공법 변경 · 허가기간 : 2013.5.24. ~ 2020.12.31. → 2022.2.28. · 공법변경 : 가교+크레인 가설 → 크레인 가설 - 사업위치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일원 - 허가기간 : 2013.5.4. ~ 2022.2.28. - 허가조건 : 하천둔치 공사 시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 후 해당 지자체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함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 신청인 : *** ○ 허가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및 대합실 보수정비</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6번지 외(문화재 보호구역 안)</li> <li>- 설치제원</li> <li>1) 기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2개소 : 대변기 교체 10개, 세면기 교체 4개, 칸막이 설치 5개, 바닥 판석교체(면적 동일 211.74㎡, 타일→판석), 재도색 291.3㎡, 돈나무식재 (116주+51주, H=0.8m)</li> <li>· 대합실 2개소 : (바닥) 합성목재데크→제주 판석으로 교체 설치(면적 동일)</li> </ul> </li> <li>2) 변경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2개소 : 대변기 교체 10개, 세면기 교체 4개, 칸막이 설치 5개, 바닥 판석교체(면적 동일 211.74㎡, 타일→판석), 재도색 291.3㎡, 설비·배전함 보수, 진입로 보수 각4.65㎡</li> <li>· 대합실 2개소 : (바닥) 합성목재데크→제주 판석으로 교체 설치(면적 동일)</li> </ul> </li> </ul> <p>○ 허가기간 : 2018.7.10.~2019.7.9.(변경없음)</p>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이동통신용 무선중계기 설치</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번지 21호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0m)</li> <li>- 사업내용 : 이동통신용 기지국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중계기 8㎡, 선로(보강) 869m</li> <li>· 중계기 높이 6m(피뢰침포함), 바닥데크 2m*2m</li> </ul> </li> </ul> <p>○ 허가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2018.8.13.~2018.12.31.</li> <li>· (변경)2018.8.13.~2019.6.30.</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홍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li> <li>- 사업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19-9, 산20-1, 산30-3번지 일원 (문화재 구역 내)</li> <li>- 허가내용(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강공사</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li> <li>· (당초) 2016.12.30.~2018.12.29.</li> <li>· (변경) 2016.12.30.~2019.12.29.</li> </ul>	
	<p>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증축</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085-1, 1085-3(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6m)</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기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633㎡, 건축면적/연면적 126.44㎡</li> <li>· 최고높이 5.4m, 경골목구조, 지상1층(경사지붕)</li> </ul> </li> <li>2) 변경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633㎡, 건축면적/연면적 126.44㎡</li> <li>· 최고높이 5.4m, 경골목구조, 지상1층(경사지붕)</li> <li>· 조경시설(아치, 웬스 각1개소→아치1개소), 목재데크 11㎡→27.2㎡, 쇠석포장 21㎡→10.5㎡</li> <li>· 수목식재 : 녹차나무 10주, 은행나무 1주→녹차나무, 은행나무 삭제, 야자나무 1주 식재 등</li> </ul> </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8.8.13.~2019.9.30.</li> </ul>	<p>&lt;허가사항 변경허가&gt;</p>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10명